

「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김성기 의원
- 제안일자 : 2024. 3. 5.
- 회부일자 : 2024. 3. 13.
- 상정일자 : 2024. 3. 14.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‘지방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’로 표현이 변경되어 주민참여 영역이 확대 되었다고 해석됨에 따라 우리 군 주민참여예산 범위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표현 변경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7조제1항, 제8조, 제10조, 제11조제1항, 제14조)
 - (현행) 예산 편성 → (개정)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추가(안 제14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하여 ‘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’ 라고 명시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‘예산 편성’에 국한된 우리 군 조례의 주민참여 영역을 상위법 개정애 따라 ‘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’으로 포괄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참여를 확대 보장하려는 것임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조문의 용어 중 (현행) ‘예산편성’을 (개정) ‘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’으로 수정하여 주민이 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조례의 표현을 수정함으로써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애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